

---

# 제6차 제1기 전국위원회

2025년 7월 19일(토) 오후 7시 온라인 회의

---

## 순서

---

19 : 00 – 제6차 전국위원회 회의

---

## 회의 및 자료집 순서

모두발언

성원보고

개회선언

서기, 진행요원지정

회순통과

---

### 안건 사항

1. 당규 제11호 일부 개정의 건
  2. 열린민주당 합당 논의의 건
- 

### 별첨

1. <당규 제11호 재정 및 예산결산위원회 일부개정당규안>

## **전국위원 명단**

| 구분        | 명단                                      |
|-----------|-----------------------------------------|
| 당대표       | 한창민                                     |
| 부대표       | 임명희 정혜연                                 |
| 당 소속 국회의원 | (한창민)                                   |
| 광역 시도당위원장 | (임명희) 송치용 김진호 (최혜선) (정혜연) 박형규(*지역 가나다순) |
| 사무총장      | 김보경                                     |

| 권역          | 전국위원        |
|-------------|-------------|
| 강원(2)       | 김덕기 조영진     |
| 경기인천(1)     | 서정범         |
| 대전충청,세종(3)  | 목진오 이훈 최혜선  |
| 서울(3)       | 송성준 이병은 고석균 |
| 영남(2)       | 국민수 최영규     |
| 호남제주(2)     | 박봉리 이수현     |
| 지명직 전국위원(2) | 강점석 박환수     |

|    |     |
|----|-----|
| 합계 | 22명 |
|----|-----|



---

## 안건 사항

1. 당규 제11호 일부 개정의 건
2. 열린민주당 합당 논의의 건

## [안건 1] 당규 일부 개정의 건

[주문사항] 당헌에 의거, 당규 제11호 일부를 개정하여 주십시오

### 1. 관련규정

[당헌]

제4장 전국위원회

제9조(지위와 구성)

③ 전국위원회의 권한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당규의 제정과 개정

...

10. 대표단회의가 제출한 안건의 심의

11. 당의 정책 및 사업 등 주요한 결정

12. 기타 당헌·당규가 정하는 권한

#### 1) 취지 및 경과

—<제5차 제1기 전국위원회(2025. 6. 29.)>에서 제정된 당규 중 제11호에서 예산결산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제기되어, 이에 해당 내용에 대한 당규 개정안을 상정합니다.

#### 2) 당규 제11호 일부개정안

※ 별첨1. <당규 제11호 재정 및 예산결산위원회 일부개정당규안>

## [안건 2] 열린민주당과의 합당 논의의 건

[주문사항] 당헌에 의거, 열린민주당과의 합당 논의의 건을 심의·의결하여 주십시오

### 1. 관련규정

[당헌]

제4장 전국위원회

제9조(지위와 구성)

③ 전국위원회의 권한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당규의 제정과 개정

...

10. 대표단회의가 제출한 안건의 심의

11. 당의 정책 및 사업 등 주요한 결정

12. 기타 당헌·당규가 정하는 권한

#### 1) 취지

-열린민주당과 사회민주당의 공동의정활동 및 합당 논의가 진행되지 않는 상황을 공유하고, 당 최고의결기구인 전국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통해 향후 관련 방침을 정하고자 함.

#### 2) 경과

-22대 총선에서 열린민주당과 사회민주당은 다음과 같이 합의함.(2024. 3. 4.)

4. 열린민주당과 사회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연합정치의 실천을 위해 공동의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한다.

5. 총선 이후 열린민주당과 사회민주당은 당원들의 총의를 바탕으로 합당 추진을 비롯한 다양한 연합정치를 모색하기 위해 노력한다.

- <새진보연합 선거연합 방침에 따른 열린민주당 사회민주당 공동후보 추천 합의문> 중

- 양당 지도부회의에서 ‘열린민주당 추천 보좌진 면직’ 이후 ‘공동의정활동(새 보좌진 추천 등)과 합당에 대한 입장’을 열린민주당 대의원총회를 거쳐 전달하기로 함. (2025. 2. 18.)
- 열린민주당 비대위원장이 사퇴함. 이후 열린민주당 비대위원장 및 대표 선출 없음. 사회민주당은 총 4차례 공문을 통해 (2월 27일, 3월 10일, 3월 14일, 3월 21일) 열린민주당의 입장을 요청함.
- 열린민주당은 2차례 회신 공문(3월 6일, 3월 14일)에서 ‘공동의정활동(새 보좌진 추천 등) 및 합당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음. 3월 21일 사민당 발송 공문 이후 열린민주당 회신 없음.

※ 별첨 1.

당규 제11호 재정 및 예산결산위원회 일부개정당규안

제27조(구성 및 선출방법) <개정 2025. 0. 00.>

① 중앙 예산결산위원회는 3인 이상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광역시·도당 예산결산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25. 0. 00.>

② 중앙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은 당대표가 추천하고, 전국위원회에서 인준한다. <신설 2025. 0. 00.>

③ 광역시·도당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은 광역시·도당 위원장이 추천하고,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다. <신설 2025. 0. 00.>

④ 위원장이 궐위될 경우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위원장이 새로 임명될 때까지의 위원장 권한 대행자를 정한다. <신설 2025. 0. 00.>

⑤ 광역시·도당 예산결산위원회가 구성되지 못하였을 경우 중앙 예산결산위원회가 관할한다. <신설 2025. 0. 00.>

⑥ 예산결산위원장은 사무총장과 협의하여 사무총국 당직자 중 1인을 간사로 임명할 수 있다. 간사는 예산결산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예산결산위원회의 일상적 사무를 처리하며 예산결산위원회에 그 처리 결과를 보고한다. <개정 2025. 0. 00.>

제28조(임기 및 운영) ① 중앙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광역시·도당 예결위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광역시·도당 규약으로 정한다.

② 각급 예산결산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7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해야 하며, 위원장이 회의소집을 거부할 때는 회의소집을 요구한 1/3 이상의 위원이 과반수 위원의 동의를 얻어 직접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④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민주주의의 일반원칙에 따른다.

〈본조 신설 2025. 0. 00.〉

부칙 〈2025. 0. 00. 제2호〉

본 당규는 2025. 0. 00. 전국위원회가 의결한 때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제27조 (간사)                                                                                                          | 제27조 (구성 및 선출방법) ① 중앙 예산결산위원회는 3인 이상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광역시·도당 예산결산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                                                                                                                    | ② 중앙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은 당대표가 추천하고, 전국위원회에서 인준한다.                                                                       |
|                                                                                                                    | ③ 광역시·도당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은 광역시·도당 위원장이 추천하고,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다.                                                     |
|                                                                                                                    | ④ 위원장이 궐위될 경우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위원장이 새로 임명될 때까지의 위원장 권한 대행자를 정한다.                                                          |
|                                                                                                                    | ⑤ 광역시·도당 예산결산위원회가 구성되지 못하였을 경우 중앙 예산결산위원회가 관할한다.                                                                     |
| 예산결산위원장은 사무총장과 협의하여 사무총국 당직자 중 1인을 간사로 임명할 수 있다. 간사는 예산결산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예산결산위원회의 일상적 사무를 처리하며 예산결산위원회에 그 처리 결과를 보고한다. | ⑥ 예산결산위원장은 사무총장과 협의하여 사무총국 당직자 중 1인을 간사로 임명할 수 있다. 간사는 예산결산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예산결산위원회의 일상적 사무를 처리하며 예산결산위원회에 그 처리 결과를 보고한다. |
| <신 설>                                                                                                              | 제28조(임기 및 운영)                                                                                                        |

| 현행 | 개정안                                                                                                                                                                                                                                                                                                                                                                               |
|----|-----------------------------------------------------------------------------------------------------------------------------------------------------------------------------------------------------------------------------------------------------------------------------------------------------------------------------------------------------------------------------------|
|    | <p>① 중앙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광역시·도당 예결위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광역시·도당 규약으로 정한다.</p> <p>② 각급 예산결산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7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해야 하며, 위원장이 회의소집을 거부할 때는 회의소집을 요구한 1/3 이상의 위원이 과반수 위원의 동의를 얻어 직접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p> <p>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p> <p>④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민주주의의 일반원칙에 따른다.</p> |